

202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공고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20.

진도군·녹색에너지연구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 목적: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참여업체 컨소시엄 선정
- 사업내용: 주택, 상업·공공 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 및 마을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를 설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7. 12. 31.
* 실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국비 집행을 감안하여 선정 후, 계약시 별도로 정함.
- 모집대상

구분	대상지역	에너지원	비고
진도군	진도군 관내 전 지역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융·복합 모델대상	

* 컨소시엄 선정 후 사업대상 수요조사 진행

2.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업체와 모니터링업체, 설계·감리업체 등으로 참여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태양광 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
- 시공업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2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 2026년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우선 자격대상이며, 참여기업 미선정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 * '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미 발표시 '25년 선정실적 대체
- 모니터링업체: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 설계·감리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및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공 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20.(금) ~ 3. 6.(금) 12:00까지
- 공고장소: 진도군·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
- 접수장소: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성과확산실(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177, 2층)
 - ※ 접수 담당자: 이승주 책임연구원 061)288-1061, 이금호 선임연구원 061)288-1062
- 접수방법: 직접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출공문,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별첨자료 각 1부.2. 컨소시엄 참여업체 별 서류평가 증빙자료 각 2부.(칼라원본 1부 포함)3. 기술제안서(한글, MS-워드 등)10부 및 비계량평가 발표용 PPT 자료 10부(칼라원본 1부 포함)4. 발표자료 저장용 USB 2개 |
|---|

4. 평가절차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붙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참조)
 - 최고점수를 획득한 컨소시엄으로 선정(최저 합격점수 : 70점)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량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으로 선정
 - 최고 점수를 득한 컨소시엄이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컨소시엄 선정
- 평가일시/장소 : 2026. 3. 13.(금) 10:00 / 녹색에너지연구원 세미나실
 -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하며 상세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

5. 최종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2026. 3월 중 *공문 통보 예정
- 선정결과 공고: 진도군 ·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고시/공고)

6. 추진절차



7. 기타(특기) 사항

- 2027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내용에 따름(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공고 전 참여업체 컨소시엄 선정)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특히 진도군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여건과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본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은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용·복합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미선정시 컨소시엄은 자동으로 파기됨.
- 참여업체는 태양광 관련업체가 주관기관으로 하여 해당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여야 함
- 참여업체 선정은 컨소시엄 1개 접수 시에도 평가 진행함 최저합격점수: 70점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컨소시엄 업체가 부담
-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소시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가 컨소시엄 대상자로 승계함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추가제출,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함
-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선 필요시 기재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태양광 시공업체는 사업 예정지역 내 관할 한전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붙임 1. 용복합 지원사업 참여업체 평가지표 1부
 2. 용복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진도군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계 량 (50)	시공능력* (47)	보급 참여기업	-	15	'26년('25년) 참여기업의 경우 만점(15점) 부여
		보급 비 참여기업	기술인력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시공실적	10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
		신용도		5	컨소시엄 업체 신용등급
		컨소시엄 소재지		8	진도 소재지 지역업체 참여 여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		7	컨소시엄 시공업체의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실적
		연도별 자체 사후관리 수행		5	'23년~'25년 에공단 융복합 사후관리 수행 실적
	A/S 전담업체 지정여부		7	A/S 전담업체 지정여부(한국에너지공단)	
모니터링능력 (3)	REMS 연동률(%)		3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률(%)	
비 계 량 (50)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지역특성 및 융복합지원사업 필요성
		민원, 인·허가사항		4	민원 및 관련법규 저축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참여기관 (기업) (10)	참여기관(기업) 적정성		5	전체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5	전체 참여기관별 사업추진 역할,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 (16)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3	지역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적정성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3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6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4	당해년도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4)	사후관리(모니터링) 계획		8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수행중 안전 관리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2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지자체활성화 관련 기대효과 등		
합 계				100	

* 본 평가는 2027년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 모집 공고이며, 공모 사업에 탈락시 컨소시엄은 그 효력이 소멸됨.

* 공모 탈락시 대상 지자체,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은 사업대상지의 사전 전수조사등 사업공모 준비기간에 발생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 권소사업(전체) 평가 세부기준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6년(‘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준용

* A기업이 태양광, 태양열 등 2개 이상의 에너지원에 신청한 경우 각각 에너지원별로 점수 산정

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여부(15점)

구분	참여기업 선정	비 고
배점	15	

* ‘26년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발표 시 ‘26년 선정 증빙자료 제출 제출기한 내 미 발표 시 ‘25년 선정 증빙자료 제출

② 기술인력(총점 5점, 비 참여기업)

-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3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① 7인 이상	3.0	3.0	3.0
	② 6인	1.7	1.8	2.0
	③ 5인	1.3	1.7	1.8
	④ 4인	1.0	1.5	1.7
	⑤ 3인	0.7	1.0	1.5
	⑥ 2인	0.5	0.7	1.0
	⑦ 1인 이하	0	0	0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① 7인 이상	1.2	1.2	1.2
	② 6인	1.0	1.0	1.0
	③ 5인	0.8	1.0	1.0
	④ 4인	0.7	0.8	1.0
	⑤ 3인	0.5	0.7	0.8
⑥ 2인	0.3	0.5	0.7	
⑦ 1인 이하	0	0	0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의 합계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인력 근무경력(2점)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태 양 광	기 타	배 점
2점 한도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이상(또는 중급기술자)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2.0
	② 600개월 이상 ~ 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 ~ 700개월 미만	1.7
	③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1.3
	④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 ~ 300개월 미만	1.0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0.7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0.8
	② 500개월 이상 ~ 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0.7
	③ 2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0.5
④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3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컨소시엄 업체 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평균으로 산정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총 5점 만점으로 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신청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4. 에너지원별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5. 참여업체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6.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7.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8. 기술인력보유 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 보험 가입서류(화면인쇄 불인정)

* 경력수첩 제출시는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시는 불인정

9. 기술인력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10.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예)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 20개월 + 홍길순 3개월)
11.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해당 신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예) 홍길동이 한국업체(주)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 다음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업체(주)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에 36개월이 됨
12. 투입인력 기술인력은 전기, 토목, 기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증 및 경력만 인정
13. 재직중에 취득한 자격증 기술인력 근무경력에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③ 시공실적(총점 10점, 비참여기업)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 설치용량(6점)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수열(kW)	기타(kW, ㎡)	배 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6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5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4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3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0

○ 설치개소(4점)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수 열	기 타	배 점
300 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4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3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2
50 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0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각 컨소시엄 내 배점을 합계하여 평균으로 산정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공고일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함)
 -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확인서로 제출 가능(설치확인서의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25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은 제외),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단,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불인정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 가능
 -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발주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공고일 이전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 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필요시 현장 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시공실적증명서 기준)
8. 태양광 설비가 2kW/개소 미만인 경우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는 아래와 같이 따름
 - * 시공실적 설치개소는 3kW당 1개소로 인정, 설치용량은 30%만 실적 인정
 - * 태양광 0.3kW 설비 12개소 시공한 경우, 실적개소 1개소(0.3kW x 12개소/3kW)인정 및 설치용량 1kW(0.3kW x 12개소 x 0.3)적용(소수점아래 버림)

④ 신용도(5점) ※ 컨소시엄 참여업체별 점수의 평균으로 함. 단, 설계·감리, 모니터링 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5점 한도	업체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5
	업체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4
	업체신용평가등급 BB+, BB0, BB-	3
	업체신용평가등급 B+, B0, B-	2
	업체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

<업체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신청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가능한 신용정보업자(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www.fss.or.kr)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⑤ 컨소시엄 기업 소재지(8점) * 컨소시엄 전체 참여기업 평가함

구분	참여업체 중 1개 이상이 진도군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중 1개 이상이 진도군과 인접*한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모두가 전남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일부가 전남에 본점을 두고 있음
배점	8	5	2	0

- * 모집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를 뜻함
- * 인접 : 컨소시엄 업체(등기부등본 주소기준)와 진도군청(본청)기준 직선거리 50km 이내 있는 기업
- *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공고일이전 기준)

⑥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7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 분	5회 참여	3회 이상 참여	1회 이상 참여	미참여
태 양 광	4	3	2	0
기타 발전원	3	2	1	0

- * 적용기간 : 최근 5년(2022년 ~ 2026년)
- *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 합계의 한도는 최대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증빙서류 :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⑦ 연도별 자체 사후관리 수행(5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배점	0	5
A/S 관리대장 (접수·처리 등)	미 제출	제출

- ※ 에공단 센터 의무사후관리 수행과는 별도로 별 자체 관리현황 자료 평가
- ※ 최근 3개년('23~'25년) 융복합 사업 대상지 A/S 접수·이행 관리현황 실적(신규는 평균점수 적용)
-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컨소시엄 자체 관리현황 자료 제출(주소 대상지 설치 여부 및 A/S 현황 등)
- ※ 신청 시공업체 전체가 제출되어야 5점 부여

⑧ A/S 전담업체 지정 여부(7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2개) 지정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1개) 지정		없음
	50km*이내 (전담업체 모두)	50km*이내 (1개 업체 이상)	50km*초과 (전담업체 모두)	50km*이내	50km*초과	
배점	7	5	2	4	1	0

- ※ 2026년 지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 지정서 첨부
→ 공고일 기준 2026년 미 발표 시 2025년 지정서로 같음함
- * 컨소시엄 업체(등기부등본 주소 기준)와 진도군청(본청)과의 직선거리 기준

⑨ 모니터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률(3점)

구분	98.0% 이상	98.0% 미만 ~ 95.0% 이상	95.0% 미만 ~ 90.0% 이상	90.0% 미만
배점	3.0	2.5	2.0	1.5

- ※ 연동률은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연동률) 게시
- ※ 연동률은 '25. 1월부터 접수 전월까지 각 월말 기준 수치의 평균값 적용
- ※ REMS 연동률(%)은 최소 50개소 이상 연동 모니터링업체에 대해 산정
- ※ **신규업체는 제안서 제출 모니터링 인증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 신규업체를 제외한 제안서 제출 인증업체의 평균점수를 구한 후 전체 평균점수가 2.9점일 경우 2.9점 부여, 2.8점일 경우 2.8점 부여
- * 신규업체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연동 개소수 50개소 미만 또는 인증 1년 이하 업체
- * 평가를 위해 非보급사업 등을 REMS에 연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시공

□ 비계량평가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합계		50				
비 계 량 평 가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5	3	1
		민원, 인·허가사항	4	3	2	1
	참여기관 (기업) (10)	참여기관(기업) 적정성	5	4	3	2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5	4	3	2
	사업추진 (16)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3	2	1	0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3	2	1	0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6	5	4	3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4	3	2	1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4)	사후관리(모니터링) 계획	8	6	4	2
		수행중 안전관리	4	3	2	1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2	1	0		

□ 제출서류 작성 기준

1. 제출서류 구성 및 내용

1-1. 제출서류의 구성

- 가. **제출공문**,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별첨자료 각 1부.
- 나. 컨소시엄 참여업체별 서류평가 증빙자료 각 2부.(칼라 원본 포함)
 - 기업 신용평가등급, 소재지, 응복합지원사업 참여도 등 계량 평가 해당 항목 일체
 - * `26년(`25년) 보급사업 비 참여기업의 경우 기술인력·시공실적 반드시 포함**
- 다. 기술제안서 및 발표 평가PPT(제출부수 각 10권, 칼라원본 1권 포함)
- 라. 발표자료 저장용 USB 2개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작성

1-2. 제안서 내용(제출부수 각 10부)

- 1장 인프라(사업 필요성 및 민원 인허가사항)
- 2장 참여기관(참여기관 적정성 및 기관별 역할, 계획)
- 3장 사업추진(에너지원 용량구성에너지원별 시공계획, 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당해연도 완료계획)
- 4장 사후관리 모니터링 계획 및 수행중 안전관리, 완료 시 기대효과
- 5장 기타 제안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제안

2. 제안서 형식

2-1 기술 제안서

가. 구성형식(활자크기 : 12포인트 이상)

장 :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 (16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절 : 1.1, 2.1, 3.1 → (15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항목 : 1.1.1 → (14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1) → (이하, 12포인트/휴먼명조)

가) -----

(1) -----

(가) -----

① -----

나. 기술제안서의 본문내용은 50쪽 이내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출하되, 쪽 번호 형식 (-1-, -2-), 대항목별로 간지(분홍색 색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 목차 및 간지는 쪽에서 제외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2-2 비계량평가 발표자료(PPT) 작성방법

가. 목 적 : 발표평가 시 심사위원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함.

나. 작성방법 : 파워포인트(필수) 20매 이내

다. 작성내용 : 제안서 목차 내용

라. 시간분량 : 15분 이내

2-3 제안서의 인쇄/제본형식

가. 인쇄형식

1) 제안서 규격 : A4용지(210mm x 297mm), A3용지(297mm x 420mm)

2) 표 지 지 질 : 백색 레자크지(200g/m², 무광택, 코팅금지)

3) 본 문 지 질 : 백상지, 80g/m²

4) 간 지 지 질 : 분홍색 색지(견출지 부착 안됨, 대항목만 적용)

5) 인 쇄 방 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기술제안서는 양면인쇄)

6) 제 본 방 법 : 무선철에 의한 제본(좌철)

나. 원본을 제외한 모든 제안서의 내용에는 칼라인쇄 및 칼라용지 삽입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 다. 모든 제안서는 한글 및 MS-워드 등(기술제안서) 파워포인트(비계량평가)로 작성 가능하며, 부득이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하여야 한다.
-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 형식에 따라 누락 분야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함. 또한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한다.
 - ※ 기술제안서 작성분량(50쪽)을 초과하는 분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나.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원본은 관리번호를 1/11로 기재하며, 사본은 2/11~11/11로 기재하여야 함.
- 다. 제안자현황 평가서의 원본은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본대조필”표시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매쪽마다 원본대조필은 생략하되 책자의 앞면에 원본대조필 및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등록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함.
- 라.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마.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바.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 전문용어는 한글로 용어 해설을 하고,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아.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자.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차.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유로 귀속한다.
- 카.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자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 업체를 인식 또는 상대 업체와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진도군 2027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신청서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상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선정되
고자 신청하며, 선정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별첨 1.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2. 평가지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분야별 면허증 사본 각 1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 주관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이 1개인 경우는 '(대표)주관기관'에만 작성

[별 첨]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p>『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 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26.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대리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p>				
<p>※ 지참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p>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참여기업(주관기업) 대표자 : (인)

□ 평가 항목 증빙자료

※ 작성시 주의사항

- 사업공고문의 “평가항목” 을 반드시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할 것
- 1개의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원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할 것** (예. 태양광 증빙자료(1~3번), 태양열 증빙자료(1~3번))
- 시공실적 증빙서류중 보급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설치의무화) 증빙은 설치내용란에 신청자(소유자)명, 증빙서류1에 설치확인 신청번호를 기입할것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식별 불가시, 서류평가에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음

□ 주관기업명 : 예시)에너지시청

참여기관명	설치담당 에너지원	'26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유무 (단, 설치예정인 에너지원에 대한 선정 유무임)
예시) 한국솔라	태양광	○ 또는 X
예시) 메가태양열	태양열	○ 또는 X

* '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미 발표시 '25년 선정실적 대체

예시) □ 한국솔라 증빙자료

1.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총괄표 (근무경력 합계 : 산업기사이상 __명, __월, 기능사 __명, __월)

자격증	번호	성명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근무경력(개월)
산업기사 이상	1				
	2				
	3				
	4				
	5				
	6				
	7				
	8				
	합계				
기능사	9				
	10				
	11				
	12				
	13				
	14				
	합계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성명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성명	자격증 사본(이미지파일)	경력증명 사본(이미지파일)
1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2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2. 시공실적

가. 총괄표

번호	설치내용	설치완료일	설치용량	설치개소
1	예시)2023 행복시 융복합사업	2023.12.10.	90kW	30
2	예시)2023 대한시 지역지원사업	2023.11.30.	50kW	2
3				
합계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설치내용	증빙서류1(이미지파일)	증빙서류2(이미지파일)
1			
2			

3 기업신용도

가. 신용도 등급 : _____

나. 증빙서류(이미지파일)

4.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실적

가. 총괄표

구 분(사업명)	내용	비 고
00년도 □□사업 (00년도)	△△시○○구축	
00년도 □□사업 (00년도)	△△시○○구축	
00년도 □□사업 (00년도)	△△시○○구축	

나. 증빙서류